	CEO	실장	부서장
결			
재			

<u>○○○○</u> [개인정보처리자명]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

0000. 00. 00.

[제·개정 이력]

순 번	구 분	시행 일자	제정ㆍ개정 주요내용
0	제정	0000.	1. 00000 2. 00000 3. 00000
0	일부개정	0000.	1. 00000 2. 00000 3. 00000
0	전부개정	0000.	1. 00000 2. 00000 3. 00000

목 차

제1장 총 칙 (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 정의) 제3조(적용 범위)	00
제2장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0 0
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······(제6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) 제7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) 제8조(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)	00
제4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0 0
제5장 기술적 안전조치(제11조(접근 권한의 관리) 제12조(접근 통제) 제13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 제14조(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) 제15조(악성프로그램 등 방지) 제16조(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)	00
제6장 관리적 안전조치(제17조(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) 제18조(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) 제19조(위험도 분석 및 대응) 제20조(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)	00
제7장 물리적 안전조치(제21조(물리적 안전조치) 제22조(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) 제23조(개인정보의 파기)	30
제8장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(00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'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'(제2016-35호)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 정의)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정보주체"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개인정보파일"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(集合物)을 말한다.
- 3. "개인정보처리자"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
- 4. "대기업"이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.
- 5. "중견기업"이란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
- 6. "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
- 7. "소상공인"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8. "개인정보 보호책임자"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9. "개인정보취급자"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, 파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.
- 10. "개인정보처리시스템"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.
- 11. "위험도 분석"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· 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 석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12. "비밀번호"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.

- 13. "정보통신망"이란 「전기통신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·가공· 저장·검색·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.
- 14. "공개된 무선망"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(AP)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.
- 15. "모바일 기기"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, 스마트폰,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.
- 16. "바이오정보"란 지문, 얼굴, 홍채, 정맥, 음성,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.
- 17. "보조저장매체"란 이동형 하드디스크, USB메모리, CD(Compact Disk), DVD(Digital Versatile Disk)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 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·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.
- 18. "내부망"이란 물리적 망분리,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.
- 19. "접속기록"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, 접속일시, 접속지 정보,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,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"접속"이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.
- 20. "관리용 단말기"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, 운영, 개발,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.
- 18. "관리용 단말기"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, 운영, 개발,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 범위)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<u>○○○○○</u> (개인정보처리자명)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에게는 본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 적용된다.

제2장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
- 제4조(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)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 처리자명)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의 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.

-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, 제2항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<u>○○○(최고경영층)으로부터</u>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이력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·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5조(내부 관리계획의 공표)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내부 관리계획을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② 내부 관리계획은 임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

공하여야 한다.

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

- 제6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) ①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○○○○○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책 등)로 정한다.
- 제7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)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2.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 - 3.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
 - 4.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 - 5.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6.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
 - 7.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
 - 8.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
 - 9.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
 -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처리 현황,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.

-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, 필요하면 ○○○(최고경영층)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8조(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)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 자명)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, 파 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.
 -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은 물론,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

- 제9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) ①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연 <u>○</u>회(횟수) 이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.
- 제10조(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)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교육 목적 및 대상
 - 2. 교육 내용
 - 3. 교육 일정 및 방법
 -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장 기술적 안전조치

- 제11조(접근 권한의 관리) ①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.
 - ②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.

- ③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,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④ <u>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,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<u>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접근통제시스템,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1. 문자, 숫자의 조합·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
- 최소 8자리 이상 :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
 - ※ 문자 종류 :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, 특수문자, 숫자
- 최소 10자리 이상 :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
 - ※ 단, 숫자로만 구성할 경우 취약할 수 있음
- 2.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
- 동일한 문자 반복(aaabbb, 123123 등),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(qwer 등), 일런번호(12345678 등), 가족이름, 생일,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음
- 3.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함
- ⑥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접근통제) ①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가되지 않은 내·외부자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(Internet Protocol)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
 - 2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(Internet Protocol)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
 - ② <u>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</u>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(VPN : Virtual Private Network)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.

- ③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,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업무용 컴퓨터,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<u>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·변조·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(OS: Operating System)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⑦ <u>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·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 ①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고유식별정보, 비밀번호,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.
 - ②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 야 한다. 다만,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(해쉬함수)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
 - ③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(DMZ : Demilitarized Zone)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.
 - ④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(공공기관에 해당), 위험도 분석 결과(법인 등에 해당))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시행할 수 있다.
 - ⑤ <u>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제1항, 제2항, 제3항,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 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

- ⑥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, 이용, 보관,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⑦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) ①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5만 명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,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③ <u>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·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악성프로그램 등 방지) ①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·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,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
 - 2.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
 - 3.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
- 제16조(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) ①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

- 2.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
- 3.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

제6장 관리적 안전조치

- 제17조(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) ①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 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 보호 조직명)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 - 1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
 - 2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·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자의 지정
 - 3.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부서의 지정
 - ② <u>○○○○</u>(개인정보 보호조직명)의 설치, 변경 및 폐지는 <u>○○○</u>(최고경영층)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 정한다.
 - ③ 개인정보취급부서에서는 ○○○○○(개인정보 보호조직명)과 충분히 협의, 조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④ <u>○○○○</u>(개인정보 보호조직명)은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.
- 제18조(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) ①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에는 긴급조치, 유출 통지·조회 및 신고 절차, 고객 민원 대응조치,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, 고객불안 해소조치,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19조(위험도 분석 및 대응) ①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 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한 보 안조치 적용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은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을 활용하거나 위험요소를 식별 및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.
- 제20조(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) ①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 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.
 - 1. 교육 및 감독 대상
 - 2. 교육 및 감독 내용
 - 3. 교육 및 감독 일정, 방법
 - ②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장 물리적 안전조치

- 제21조(물리적 안전조치) ①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<u>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,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 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③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・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22조(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) ① <u>○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화재, 홍수, 단전 등의 재해·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② <u>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재해·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제23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<u>○○○○</u>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완전파괴(소각·파쇄 등)
 - 2.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
 - 3.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
 - ② ○○○○○(개인정보처리자명)는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,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: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
 - 2. 제1호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: 해당 부분을 마스킹, 천공 등으로 삭제

제8장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이외,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.

제24조(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)

제25조(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작성)

제26조(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및 평가)

제27조(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도입)

제28조(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의 도입)

제30조(모의해킹 및 개선조치)

제31조(개인정보처리시스템 설계, 개발, 운영 보안)

제32조(보안 장비 및 솔루션 도입 및 운영)

제33조(형상 · 운영 관리 및 기록) 등